

원료목록 사전보고 주요 FAQ

목 차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Q1.	원료목록 보고는 어디서 하나요?	3 페이지
	Q2.	가입했던 아이디로 로그인이 안됩니다.	3 페이지
	Q3.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페이지
	Q4.	올해 처음 책임판매업을 등록했습니다. 어떻게 원료목록보고 해야 하나요?	5 페이지
2	원료목록보고 시점/대상		
	Q5.	화장품 원료목록보고는 언제 보고해야 하나요?	6 페이지
	Q6.	생산실적도 유통·판매전에 보고하여야 하나요?	6 페이지
	Q7.	2019년 3월 14일 이후부터는 새로 출시되는 제품에 한해 보고하는 것이 맞나요? 이전에 보고한 제품은 다시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6 페이지
	Q8.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이미 유통·판매된 제품의 원료목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페이지
	Q9.	사전보고로 전환되면,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보고해야 하나요?	6 페이지
	Q10.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자'로만 등록이 되어있는 수입자인데, 원료목록보고 해야 하나요?	6 페이지
	Q11.	위탁제조를 한 경우 제조업자가 보고해야 하나요?	7 페이지
	Q12.	샘플용 화장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유통·판매전에 원료목록보고를 해야 하나요?	7 페이지
3	원료목록보고 항목		
	Q13.	원료목록보고 양식에 제품 유형 표시를 위해 약칭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약칭에 대한 설명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7 페이지
	Q14.	기능성화장품 유형은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10 페이지
	Q15.	기능성화장품 품목기준코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11 페이지

목 차

	Q16.	제조업자가 여러 회사인 경우 어떻게 보고하여야 하나요?	11 페이지
	Q17.	원료목록 보고 시, 반드시 표준화된 명칭으로 보고해야 하나요?	11 페이지
	Q18.	표준화된 명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11 페이지
	Q19.	원료목록보고 시 예전명칭 (구명칭)을 기재해도 되나요?	12 페이지
	Q20.	원료목록 보고 시, 동일성분의 제품으로 수출용과 국내용으로 동시에 판매하는 경우 용도에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나요?	13 페이지
4	원료 검사결과 문구		
	Q21.	원료목록을 작성하였는데 “표준명 미등록 원료입니다.”라고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 페이지
	Q22.	원료목록을 작성하였는데 “단서조항 확인이 필요한 배합금지 원료입니다.”라고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 페이지
	Q23.	원료목록을 작성하였는데 “순수 배합금지 원료입니다.”라고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 페이지
	Q24.	원료목록을 작성하였는데 “중복된 구명칭이 있습니다.”라고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 페이지
5	변경보고		
	Q25.	언제 변경보고를 해야 하나요?	16 페이지
	Q26.	원료는 동일한데 함량만 달라지는 경우에도 변경보고를 해야 하나요?	16 페이지
	Q27.	보고 후 원료 formula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16 페이지
6	기타		
	Q28.	2019년 3월 14일 이후 유통·판매한 제품인데 아직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7 페이지
	Q29.	원료목록 엑셀파일을 업로드하였는데, “작성된 내용이 없습니다”고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7 페이지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Q1 : 원료목록 보고는 어디서 하나요?

A1 :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원료목록보고는 온라인으로만 보고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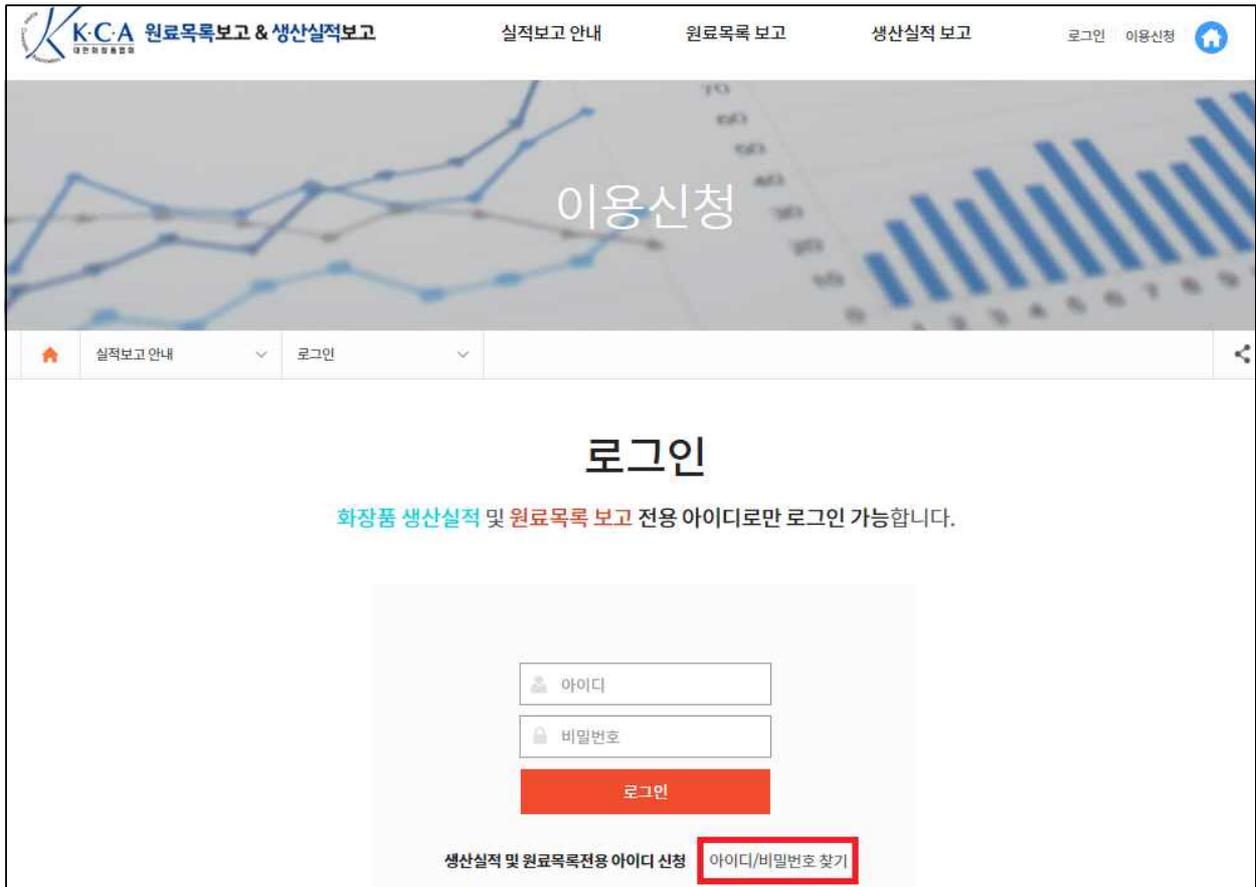


Q2 : 가입했던 아이디로 로그인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 원료목록보고는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보고” 전용 사이트에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원료목록보고 전용 아이디와 협회 회원사 아이디는 다르오니, 반드시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보고” 전용 사이트에서 로그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3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 생산실적 원료목록보고 사이트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 후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버튼을 클릭하여 보고 담당자의 이름과 이메일을 작성하시면 원료목록보고 이용을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 올해 처음 책임판매업을 등록했습니다. 어떻게 원료목록보고 해야 하나요?

A4 : 처음 식약처로 책임판매업을 등록한 경우, 대한화장품협회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보고” 사이트에서 “이용신청”을 클릭하시면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원료목록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K.C.A 원료목록보고 & 생산실적보고 실적보고 안내 원료목록 보고 생산실적 보고 로그인 **이용신청**

이용신청

실적보고 안내 이용신청

이용신청

계정 정보 *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회원사구분 회원사 비회원사

아이디 *

비밀번호 * (5~20자의 영문(대소문자)숫자만 기입, 특수문자 제외)

비밀번호 확인 *

제조판매업자 정보

제조판매업등록번호 *

제조판매업자상호 *

등록연월일 *

대표자성명 *

사업장소재지 *

제조판매업등록필증 *

원료목록보고 담당자 정보

성명 *

전화번호 * =선택= - -

핸드폰 =선택= - -

이메일 * @ 직점입력

팩스번호 =선택= - -

생산실적보고 담당자 정보 원료목록 담당자와 동일한 경우

성명 *

전화번호 * =선택= - -

핸드폰 =선택= - -

이메일 * @ 직점입력

팩스번호 =선택= - -

2.

원료목록보고 시점 / 대상

Q5 : 화장품 원료목록보고는 언제 보고해야하나요?

A5 : 「화장품법」제5조제4항에 따라 2019년 3월 14일 이후부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化妆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Q6 : 생산실적도 유통·판매전에 보고하여야 하나요?

A6 : 원료목록만 화장품 유통·판매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년도 생산실적은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Q7 : 2019년 3월 14일 이후부터는 새로 출시되는 제품에 한해 보고하는 것이 맞나요? 이전에 보고한 제품은 다시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7 : 원료목록이 사전보고 체계로 전환되면 새로 출시되는 제품은 반드시 유통·판매 전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단, 2018년 원료목록 보고를 한 제품은 다시 보고하실 필요는 없지만, 기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2018년에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은 제품은 보고를 하셔야합니다.

Q8 :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이미 유통·판매된 제품의 원료목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8 :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새로 유통·판매된 제품의 원료목록은 종전 규정에 따라 ~2020년 2월 28일(생산실적 보고 전)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Q9 : 사전보고로 전환되면,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보고해야하나요?

A9 : 원료목록이 사전보고로 전환된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보고("최초 보고")하고, 추후 변경사항이 발생 시 유통·판매 전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다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10 : '수입한化妆품을 유통·판매하는 자'로만 등록이 되어있는 수입자인데, 원료목록보고 해야하나요?

A10 : '수입한化妆품을 유통·판매하는 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기 때문에 대한화장품협회에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장품법〉

제4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조판매업자(이하 "제조판매업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제조한化妆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2.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3.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

Q11 : 위탁제조를 한 경우 제조업자가 보고해야 하나요?

A11 : 원료목록보고는 책임판매업자만 보고 대상입니다. 제조업자는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Q12 : 샘플용 화장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유통판매전에 원료목록보고를 해야 하나요?

A12 : 샘플용(견본품)인 경우에도 3월 14일 이후 최초로 제조하여 유통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유통판매전에 원료목록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원료목록 보고 항목

Q13 : 원료목록보고 양식에 제품 유형 표시를 위해 약칭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약칭에 대한 설명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A13 : 원료목록보고 공지사항 - 원료목록보고 제품유형 예시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세부유형	유형 표시	상품명 '예'
가. 영·유아용 제품류 (만3세이하의어린이용을말한다.이하같다)	1) 영·유아용 샴푸, 린스	가1	베이비 샴푸, 베이비 린스
	2) 영·유아용 로션, 크림	가2	베이비 로션, 베이비 크림
	3) 영·유아용 오일	가3	베이비오일, 베이비 마사지 오일
	4) 영·유아용 인체 세정용 제품	가4	베이비바스, 베이비 바디바스, 베이비 클렌저, 베이비클렌징바스
	5) 영·유아용 목욕용 제품	가5	베이비탐투토워시, 베이비 버블 바스
나. 목욕용 제품류	1) 목욕용 오일,정제,캡슐	나1	목욕용 오일, 캡슐, 바스볼, 샤워오일
	2) 목욕용 소금류	나2	바스솔트, 목욕소금, 마사지 솔트
	3) 버블 배스	나3	바블바스, 클렌징바스, 크림바스
	4)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나4	
다. 인체세정용 제품류	1) 폼 클렌저	다1	폼 클렌저, 폼 클렌징, 클렌징 폼, 웨이셜 워시
	2) 바디 클렌저	다2	바디클렌저, 바디워시클렌저, 크림샤워, 바디샤워, 바디워시, 워시바디, 바디클린싱, 바디샴푸, 샤워젤
	3) 액체 비누 및 화장 비누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다3	액상향균비누, 리퀴드솝, 손세정제, 핸드클리너, 핸드워시, 핸드 클렌징 워시, 물비누, 고형비누
	4) 외음부 세정제	다4	외음부 세정제, 여성청결제

유형	세부유형	유형 표시	상품명 '예'
	5) 물휴지	다5	물휴지
	6)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다6	바디스크럽, 필링젤
라. 눈화장용 제품류	1) 아이브로 펜슬	라1	아이브로우, 아이브로우펜슬, 오토브로우펜슬, 오토아이펜슬, 오토아이부라우, 아이펜슬
	2) 아이 라이너	라2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펜슬, 아이라인펜슬
	3) 아이 섀도	라3	아이섀도, 메이크업섀도우, 칼라아이즈, 콜렉션아이즈, 그라데이션아이즈, 컬러섀도우
	4) 마스크라	라4	컬링마스크라, 코팅마스크라
	5)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라5	아이리무버, 아이메이크업리무버, 리무버포아이
	6) 그 밖의 눈화장용 제품류	라6	마스크라 에센스, 마스크라 픽서
마. 방향용 제품류	1) 향수	마1	향수, 오데퍼품
	2) 분말향	마2	더스팅파우더
	3) 향낭	마3	샤쎬(sachet), 퍼품 젤
	4) 코롱	마4	샤워코롱, 오데토일렛, 오데뚜왈렛, 오데코롱, 바디코롱, 코오롱, 오드보떼
	5)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마5	퍼품드 스틱, 퍼품 스틱, 퍼품 젤
바. 두발 염색용 제품류	1) 헤어 틴트	바1	헤어코팅칼라, 칼라젤, 헤어칼라 크림, 헤어메니큐어
	2) 헤어 칼라스프레이	바2	헤어칼라 스프레이
	3) 그 밖의 염모용 제품류	바3	
	4) 염모제	바4	염모제
	5) 탈염·탈색용 제품	바5	탈염·탈색제
사. 색조화장용 제품류	1) 볼연지	사1	브러셔, 페이스선택치, 치크칼라, 피니쉬칼라
	2) 페이스 파우더, 페이스 케익	사2	콤팩트, 팩트, 파우더, 파우더팩트, 투웨이케익, 트윈케익
	3) 리퀴드, 크림, 케익 파운데이션	사3	파운데이션, 스킨커버, 커버마크
	4) 메이크업 베이스	사4	메이크업베이스, 언더메이크업베이스, 컬러베이스, 젤베이스, 스킨컨트롤베이스
	5) 메이크업 픽서티브	사5	메이크업 피니쉬, 매트 피니쉬 젤, 메이크업 픽스, 메이크업 픽서
	6) 립스틱, 립라이너	사6	립스틱, 루즈, 립라이너, 립틴트
	7) 립글로스, 립밤	사7	립크림, 립글로스, 립밤
	8) 바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분장용 제품	사8	바디페인팅, 분장용, 위장크림
	9) 그 밖의 메이크업 제품류	사9	BB크림
아. 두발용 제품류	1) 헤어 컨디셔너	아1	헤어컨디셔너, 헤어팩, 헤어트리트먼트, 헤어트리트먼트로션, 컨디셔닝 트리트먼트, 헤어트리트먼트크림, 헤어트리트먼트팩, 헤어컨디셔닝에멀전,

유형	세부유형	유형 표시	상품명 '예'
			헤어에센스
	2) 헤어 토닉	아2	헤어토닉, 헤어토너, 두발영양토너
	3) 헤어 그루밍에이드	아3	헤어글레이즈, 코팅글레이즈, 헤어스타일링젤, 헤어리퀴드, 헤어스타일링 미스트
	4) 헤어 크림, 로션	아4	헤어크림, 헤어로션
	5) 헤어 오일	아5	헤어오일
	6) 포마드	아6	포마드
	7) 헤어 스프레이.무스.왁스.젤	아7	헤어스프레이, 무스, 왁스, 젤
	8) 샴푸, 린스	아8	샴푸, 트리트먼트샴푸, 샴푸린스, 헤어린스, 트리트먼트(린스용), 린스
	9) 퍼머넌트 웨이브	아9	파마로션, 폼, 헤어컬, 웨이브로션
	10) 헤어 스트레이트너	아10	헤어스트레이트 크림, 헤어스트레이트너
	11)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	아11	
	12) 흑채	아12	
자. 손발톱용 제품류	1) 베이스코트, 언더코트	자1	베이스코트
	2) 네일폴리시, 네일에나멜	자2	네일칼라, 매니큐어, 네일에나멜, 네일폴리시, 네일뷰티
	3) 탑코트	자3	탑코트
	4) 네일 크림.로션.엔센스	자4	네일크림, 네일로션, 네일글로스, 에센스
	5) 네일폴리시.네일에나멜 리무버	자5	네일리무버, 매니큐어제거액, 락카리무버, 네일에나멜리무버, 네일폴리시리무버
	6) 그 밖의 손발톱용 제품류	자6	손톱강화제
차. 면도용 제품류	1) 애프터셰이브 로션	차1	애프터셰이브스킨, 애프터셰이브로션, 애프터셰이브밀크, 남성용스킨, 로션, 스킨컨디셔너
	2) 남성용 토템	차2	토템파우더
	3) 프리셰이브 로션	차3	프리셰이브 로션
	4) 셰이빙 크림	차4	셰이빙크림, 셰이빙로션
	5) 셰이빙 폼	차5	셰이빙폼, 셰이빙무스
	6)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	차6	남성용에센스, 남성용오일
카. 기초화장용 제품류	1) 수렴.유연.영양화장수	카1	스킨, 스킨토너, 유연수, 스킨, 아스트린젠트, 에몰리엔트
	2) 마사지 크림	카2	마사지크림, 마사지젤
	3) 에센스, 오일	카3	마사지오일, 에센스오일, 스킨오일, 나이트캡슐, 바디오일, 세럼

유형	세부유형	유형 표시	상품명 '예'
	4) 파우더	카4	파우더
	5) 바디 제품	카5	바디크림, 바디로션, 바디에센스
	6) 팩, 마스크	카6	팩, 마스크
	7) 눈 주위 제품	카7	아이크림, 아이에센스, 아이세럼
	8) 로션, 크림	카8	에멀전, 크림, 로션
	9) 손, 발의 피부연화 제품	카9	풋 크림, 풋 스크럽, 풋 미스트, 핸드크림
	10) 클렌징워터, 클렌징오일, 클렌징로션, 클렌징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카10	클렌징워터, 클렌징오일, 클렌징로션, 클렌징크림, 메이크업 리무버
	11)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카11	
타. 체취방지용 제품류	1) 데오도란트	타1	데오도란트
	2) 그 밖의 체취 방지용 제품류	타2	
파. 체모 제거용 제품류	1) 제모제	파1	제모제
	2) 그 밖의 체모 제거용 제품류	파2	
	3) 제모왁스	파3	

Q14 : 기능성화장품 유형은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A14 : 기능성화장품 유형은 기능성화장품으로 보고 또는 심사받은 제품에 한해 기재하는 항목이며, 표시기호(약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시기호(약칭)	내 용
기능성 화장품	F1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 또는 심사받은 제품 (미백)
	F2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 또는 심사받은 제품 (주름개선)
	F3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 또는 심사받은 제품 (자외선차단)
	F4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 또는 심사받은 제품 (미백+주름개선)
	F5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 또는 심사받은 제품 (미백+자외선차단)
	F6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 또는 심사받은 제품 (주름개선+자외선차단)
	F7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 또는 심사받은 제품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F8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 또는 심사받은 제품 (염모, 탈염탈색)
	F9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 또는 심사받은 제품 (제모)
	F10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 또는 심사받은 제품 (탈모 완화)
	F11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 또는 심사받은 제품 (여드름성 피부 완화)
	F12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 또는 심사받은 제품 (아토피성 피부 보습)
	F13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 또는 심사받은 제품 (튼살로 인한 붉은 선 완화)
	F14	기능성 화장품으로보고 또는 심사받은 제품 (새로운 추가된 기능성 기타 복합유형)

Q15 : 기능성화장품 품목기준코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15 : 기능성화장품 심사제품과 심사제외(보고)제품의 기능성화장품 품목기준코드를 확인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1) 기능성화장품 심사제품 "품목일련번호" (택1)

- ① 식약처 전자민원창구(<https://nedrug.mfds.go.kr/pbp/CCBDB01>) >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 > 업체명 검색 > “품목일련번호” 입력
- ②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 통지서 오른쪽 하단의 "품목기준코드" 입력

2) 기능성화장품 보고제품 "보고일련번호" (택1)

- ① 식약처 전자민원창구(<https://nedrug.mfds.go.kr/pbp/CCBDC01>) >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 (보고) > 업체명 검색 > “보고일련번호” 입력
- ②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 하단의 (구) “번호” 입력

Q16 : 제조업자가 여러 회사인 경우 어떻게 보고하여야 하나요?

A16 : 동일한 제품을 여러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한 경우 제조업자별로 각각 입력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한 제조업자는 원료목록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Q17 : 원료목록 보고 시, 반드시 표준화된 명칭으로 보고해야 하나요?

A17 : 화장품 원료목록보고 시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원료는 반드시 표준화된 원료명칭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표준화된 명칭이 아닐 경우 “표준명 미등록 원료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뜹니다. 성분사전 사이트 등에서 표준화된 명칭을 확인하시어 표준화된 명칭으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Q18 : 표준화된 명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18 : 표준화된 원료명칭은 ①협회에서 정리하여 게시한 표준화원료명칭 엑셀파일 자료 및 ②협회 성분사전(<https://www.kcia.or.kr/cid/>)에 등재되어 있는 표준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① 협회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https://kcia.or.kr/report/main/>) 접속 => 화면 하단 공지사항의 “원료 목록보고 표준화 명칭 목록 안내” 클릭
- ② 협회 성분사전(<https://www.kcia.or.kr/cid/>) 접속 => 화면 하단의 “표준화 명칭 목록 다운로드” 클릭 또는 “화장품 성분명 검색” 클릭 => 성분명 검색

※ ①, ②의 방법에도 원료명칭이 검색되지 않은 경우, 성분명표준화위원회 회의에 성분명 표준화 신

청을 하신 후 표준화된 명칭을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 성분명 표준화 신청 절차

[성분사전 사이트 접속] → [성분명 표준화 신청] → [화장품 성분명 신청] → [결제] → [성분명표준화위원회 (월2회)] → [표준화명칭 확정 또는 보완]



구비서류		수수료	
신청 성분명의 종류		회원사	비회원사
성분명	ICID 등재성분	20,000	60,000
	ICID 미등재성분	50,000	120,000
상품명	성분명과 동시에 신청 시	무료	무료
	상품명외 개별 등록 시	10,000	30,000
별명		10,000	30,000

※ ICID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 미국화장품협회(PCPC)가 운영하는 국제 화장품 원료집
 ※ INCI (International Nomenclature Cosmetic Ingredient) : 국제화장품 성분의 명칭

Q19 : 원료목록보고 시 예전명칭 (구명칭)을 기재해도 되나요?

A19 : 원료목록보고 시에는 변경된 명칭 (신명칭)으로 기재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득이한 경우 예전명칭 (구명칭)을 기재하여 엑셀 Upload 해주시면 됩니다. 신명칭과 일대일로 매칭되는 구명칭을 기재할 경우 시스템 상에서 신명칭으로 자동 변환되어 보고됩니다. 다만, 구명칭이 통칭하는 명칭이어서 여러 명칭으로 세분화된 경우는 변경할 명칭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변경된 명칭(신명칭)과 구명칭이 일대일로 매칭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는잎그늘사초뿌리추출물에서 산겨울뿌리추출물로 하나의 성분명으로 변경된 경우, “가는잎그늘사초뿌리추출물”로 원료목록 보고를 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겨울뿌리추출물”로 변환됩니다.

구명칭	영문명	→	신명칭
가는잎그늘사초뿌리추출물	Carex Humillis Root Extract		산겨울뿌리추출물

※ 구명칭이 통칭하는 명칭이어서 여러 명칭으로 세분화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이전에 “감초추출물”로 불리던 성분명이 “스페인감초뿌리추출물”, “감초뿌리추출물”, “창과감초뿌리추출물”로 세분화된 경우, 감초추출물로 원료목록 보고를 하면 변경될 신명칭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적용”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구명칭	영문명	→	신명칭
감초추출물	Glycyrrhiza Glabra (Licorice) Root Extract		스페인감초뿌리추출물
	Glycyrrhiza Uralensis (Licorice) Root Extract	감초뿌리추출물	
	Glycyrrhiza Inflata Root Extract	창과감초뿌리추출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	제품명	제품 유형	제조업자	원료성분명	검사결과	용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	A제품	기1	아모레	정제수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0%; width: 20px; height: 2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bottom: 5px;">3</div> 중복된 구명칭이 있습니다 - 감초뿌리추출물 적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0%; width: 20px; height: 2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left: 10px;">4</div> - 스페인감초뿌리추출물 적용 - 창과감초뿌리추출물 적용	※수출전용

또한, 단상자 등에 구명칭을 표기하는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으나 기존 포장재 재고가 소진된 이후에는 변경된 명칭으로 기재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명칭이 변경된 성분들은 ① 협회 성분사전 사이트의 명칭 변경 목록 다운로드 및 ② 협회 성분사전 (<https://www.kcia.or.kr/cid/>)에 등재되어 있는 성분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Q20 : 원료목록 보고 시, 동일성분의 제품으로 수출용과 국내용으로 동시에 판매하는 경우 용도에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나요? 동일한 내용을 2번 보고해야 하나요?

A20 : 원료목록 보고 시, 동일 성분의 제품으로 수출용과 국내용을 동시에 판매할 경우 용도에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 전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한해 용도 항목에 “E”라고 표기해주시면 됩니다.

4. 원료 검사결과 문구

Q21 : 원료목록을 작성하였는데 “표준명 미등록 원료입니다.”라고 뜹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21 : 작성하신 원료명은 표준화 명칭이 등록되지 않은 원료명입니다. 오타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화 명칭이 아닌 원료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표준화 명칭에 해당하는지 아래 2가지 방법으로 확인해보시고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표준화된 원료명칭은 ①협회에서 정리하여 게시한 표준화원료명칭 엑셀파일 자료 및 ②협회 성분사전(<https://www.kcia.or.kr/cid/>)에 등재되어 있는 표준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① 협회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https://kcia.or.kr/report/main/>) 접속 => 화면 하단 공지사항의 “원료 목록보고 표준화 명칭 목록 안내” 클릭
- ② 협회 성분사전(<https://www.kcia.or.kr/cid/>) 접속 => 화면 하단의 “표준화 명칭 목록 다운로드” 클릭 또는 “화장품 성분명 검색” 클릭 => 성분명 검색

※ ①, ②의 방법에도 원료명칭이 검색되지 않은 경우, 성분명표준화위원회 회의에 성분명 표준화 신청을 하신 후 표준화된 명칭을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Q22 : 원료목록을 작성하였는데 “단서조항 확인이 필요한 배합금지 원료입니다.”라고 뜹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22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에 수재되어 있는 원료(배합금지) 중에는 단서조항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조건부 금지가 되는 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알칸올아마이드류”의 경우 “2급 아민함량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배합금지입니다. 이렇게 단서조항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조건부 금지가 되는 원료의 경우 원료목록 보고서 “단서조항 확인이 필요한 배합금지 원료입니다.”라는 멘트를 참고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성분에 대해서 원료목록보고 시 별도의 수정작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Q23 : 원료목록을 작성하였는데 “순수 배합금지 원료입니다.”라고 뜬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23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수재되어 있는 원료입니다. 단서조항이 없는 “순수” 배합금지 원료이므로 화장품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화장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처분이 있습니다.

〈처분 기본〉

1차	2차	3차	4차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등록 취소

Q25 : 원료목록을 작성하였는데 “중복된 구명칭이 있습니다.”라고 뜬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25 :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를 위한 통칙 (2013.06.25 기준)」에 의해 일부 성분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통칭하여 부르던 원료명이 학명과 사용부위 등의 이유로 세분화되었으니, 변경된 명칭으로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명칭변경리스트는 실적보고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황련추출물”로 원료목록보고 할 경우, 변경된 명칭(세분화된 명칭) 중에서 “콥티스뿌리추출물”, “황련뿌리줄기추출물” 또는 “황련뿌리추출물”인지 확인하시어 해당 명칭으로 변경하셔야합니다.

성분사전 예전 명칭		변경된 명칭	
성분명	영문명	성분명	영문명
	Coptis Chinensis Root Extract	황련추출물	Coptis Chinensis Root Extract
황련추출물	Coptis Japonica Rhizome Extract	황련뿌리줄기추출물	Coptis Japonica Rhizome Extract
	Coptis Japonica Root Extract	황련뿌리추출물	Coptis Japonica Root Extract

5. 변경보고

Q26 : 언제 변경보고를 해야하나요?

A26 : 제품의 제조업자나 원료의 처방(formula)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 변경보고하셔야 하며,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하기 전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Q27 : 원료는 동일한데 함량만 달라지는 경우에도 변경보고를 해야하나요?

A27 : 원료목록보고는 책임판매업자, 원료 성분명, 제품명, 유형표시, 제조업자, 용도에 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는 동일한데 함량만 달라지는 경우는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28 : 보고 후 원료 formula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해야하나요?

A28 : 원료목록 보고 후 원료 formula가 변경된 경우에는 실적보고 사이트 메인에서 “변경보고”를 클릭하신 후, 원료 formula가 변경된 제품을 검색하여 클릭하시면 보고하신 제품의 보고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화면에서 직접 변경보고하기 : “등록 이력 불러오기”를 하면 이전에 보고했던 원료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된 원료 formula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선택 제품만 엑셀로 변경보고하기 : 선택한 제품만 엑셀로 업로드하여 제품의 변경된 원료목록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 (3) 전체 엑셀로 변경보고하기 : 변경하고자 하는 제품이 복수 제품일 경우 편리하신 방법입니다. 선택하신 제품 이외에 다른 변경사항이 있는 제품을 엑셀로 업로드하여 일괄 변경할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a web form titled "회사 및 담당자 정보 작성" (Company and Responsible Person Information). It is divided into two main sections: "보고업체" (Reporting Company) and "담당자 정보" (Responsible Person Information). The "보고업체" section includes fields for "상호" (Company Name), "대표자명" (Representative Name), and "소재지" (Address). The "담당자 정보" section includes fields for "성명" (Name), "이메일" (Email), "휴대전화번호" (Mobile Phone Number), "전화번호" (Phone Number), and "팩스번호" (Fax Number). At the bottom, there are three buttons: "화면에서 직접 변경보고하기" (Directly report from screen), "선택 제품만 엑셀로 변경보고하기" (Report selected products via Excel), and "전체 엑셀로 변경보고하기" (Report all via Excel).

회사 및 담당자 정보 작성			
보고업체			
상호	대한화장품협회	제조판매업등록번호	35096
대표자명	대한화장품협회	제조판매업등록일자	20190121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여의도동) 금산빌딩 907호		
담당자 정보			
성명*	대한화장품협회		
이메일*	admin	@ kcia.or.kr	직접입력
휴대전화번호	010	- 0000	- 0000
전화번호*	02	- 000	- 0000
팩스번호	=선택=	-	-

6. 기타

Q29 : 2019년 3월 14일 이후 유통·판매한 제품인데 아직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9 : 원료목록을 유통·판매 후에 보고 시에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통·판매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0 : 원료목록 엑셀파일을 업로드하였는데, “작성된 내용이 없습니다”고 뜹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30 : 엑셀 업로드 시에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작성하신 엑셀을 선택하신 다음 반드시 “엑셀업로드 및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야 엑셀 내용이 업로드됩니다. 하단에 작성하신 원료목록 내용이 뜨면 “제출”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회사 및 담당자 정보 작성 > 원료목록 작성 > 제출

원료목록 작성 (엑셀파일로 업로드하기)

엑셀 업로드

① 찾아보기 ② 엑셀업로드 및 저장 엑셀서식 다운로드

뒤로 제출